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38		접수년월일	2000. 6.14
청 원 인	주 소	서울시 은평구 용암동 700-1		
	성 명	박창규 외 41인	주민등록번호	
소개의원	임호식 의원(민주당, 은평구 제1선거구, 문교보사위원회)			
건 명	용암4-2재개발지구청산금부과처분에 관한청원			
소 관 위 원 회	도시관리위원회			

요 지

- 은평구 용암동 250번지일대 202,736㎡ 토지는 도시재개발법(구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)에 의하여 1973.12.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용암4-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고, 1985.3.19 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해 은평구에서 본사업을 승계하여 시행하고 청산금을 부과처분 한바 있음
-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청산금은 평가식 방법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면 적식 방법으로 산정하였고, 또한 청산의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분양처분고시일(환지확정일)을 기준으로 부과처분 하였는 바
- 따라서, 서울특별시는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부과처분은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배치되는 처분이고, 시유재산매매계약서의 약관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민법제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하고 있으므로
- 청원인들에 대한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법이 규정한 시점 및 청산방법으로 재청산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청산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망 하는 청원임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
 심 사 보 고 서
 2000. 7.
 도시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의결(처리)건수 : 14건(원안동의 13건, 반대 의견제시 1건)
- 안전별 심사결과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